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등록번호:20110300048]
[최초등록일:2011.09.20]
[최종등록일:20240514]

홈페이지주소 및 대표이메일
www.koondakduck.com
kkundak@naver.com

꾼닭&꾼덕(Koondak&Koonduck)

정 보 공 개 서

(주)일영이푸드(102FOOD)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일영이푸드(102FOOD)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7로 65

대 표 전 화 : 051-728-5291

대표 팩스번호 : 051-721-5284

담당부서 전화 : 051-728-5291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8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9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7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1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3
VIII .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35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사 용 브랜 드		주 소		
(주)일영이 푸드(102FO OD)	꾼닭&꾼덕(Koondak&Koonduck)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7로 65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08.16	2011.08.19	배영미	051-728-5291	051-721-5284
	법인등록번호	180111-0771104	사업자등록번호		621-81-9115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사 용 브랜 드	주 소		
대표	배영미	꾼닭&꾼덕(Koondak&Koonduck)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7로 6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배영미	051-728-5291	051-721-528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꾼닭&꾼덕(Koondak&Koonduck)"이라 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꾼닭&꾼덕(Koondak&Koonduck)	더 맛있고 더 차별화된 오븐에 꾸운닭 전문 치킨레스토랑
상 호	꾼 닭 & 쿤 덕 (Koondak&Koonduck) 이직 oo 점,	귀하의 선택에 따라“꾼닭&꾼덕 (Koondak&Koonduck) 또는 쿤닭(Koondak) 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배영미	이사	2022 05 ~ 현재	대표	업무총괄
		감사	2013. 02. ~ 2014. 03.	감사	재무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7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곤닭&곤덕(Koondak&Koonduck)**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관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가맹본부사 용기간)
	제43류 서비스표 (곤닭)	출원일자 2011.07.14 등록일자 2011년 12월30일	출원번호 41-2011002-0634 등록번호 41-0224027-0000	배영미	2021.12.30 (2021.12.30)
	제43류 서비스표 (곤닭 주니어)	출원일자 2011.07.14 등록일자 2011년 12월30일	출원번호 41-2011002-0633 등록번호 41-0224017-0000	배영미	2021.12.30 (2021.12.30)

1. 귀하는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 제품, 공급품(이하 '제품 등'이라고 한다.) 및 기타 점포 설비 등에 부착된 "갑"의 상호, 상표, 로고 등 "갑"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표지와 형상(이하 '상호 등'이라고 한다.)을 훼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3 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2. 귀하는 '상호 등'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당사에게 책임을 부담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귀하는 별도로 '상호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사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는 당사의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귀하는 '상호 등을 제 3 자가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꿰닭&꿰덕(Koondak&Koonduck)가맹사업 현황

1.꿰닭&꿰덕(Koondak&Koonduck)을 시작한 날: 2011년 05월 01일

2.꿰닭&꿰덕(Koondak&Koonduck)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 골드윙	꿰닭 (koondak)	장봉상	2011.06.02.~ 2014.03.25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188 (동대신동2가)
(주) 골드윙	꿰닭 (koondak)	이춘수	2014.03.26 ~ 2017.5.09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188 (동대신동2가)
(주)일이 축산푸드	꿰닭 (koondak)	유상이	2017.5.09 ~ 2022.3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산단3로 37
(주)일영이푸드 (102FOOD)	꿰닭 (koondak)	유상이	2022.3~ 2022.6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산단3로 37
(주)일영이푸드 (102FOOD)	꿰 닭 & 꿰 덕(Koonda k&Koond uck)	배영미	2022.6~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7로 65

3.꿰닭&꿰덕(Koondak&Koonduck)업종

영업표지	업종	
꿰 닭 & 꿰 덕 (Koondak&Koond uck)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치킨,호프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꿰닭&꿰덕(Koondak&Koonduck)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	5	-	5	4	1	5	4	1
서울	-	-	-	-	-	-	-	-	-
부산	1	1	-	2	1	1	2	1	1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4	4	-	3	3	-	3	3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꾼닭&꾼덕(Koondak&Koonduck) 가맹점 수

(단위:개)

연 도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5	0	0	0	0	5
2022년	5	0	1	0	0	4
2023년	4	1	1	0	0	4

6. 꾀닭&꾀덕(Koondak&Koonduck)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꾀닭&꾀덕(Koondak&Koonduck)외에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3년 꾀닭&꾀덕(Koondak&Koonduck) 가맹점사업자당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점포평균 면적
전체	4							
서울	-	해당없음						
부산	1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3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5개 미만으로 해당없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쿤닭&쿤덕(Koondak&Koonduck)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쿤닭&쿤덕(Koondak&Koonduck)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4	1,87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쿤닭&쿤덕(Koondak&Koonduck)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쿤닭&쿤덕(Koondak&Koonduck)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240,825]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의 7.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40,825	비공개	비공개	
광고비	소계		206,604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06,604	비공개	비공개	
판촉비	비공개	비공개	34,221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에 예치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	가맹사업부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95	051-727-8401

귀하는 또한 [농협]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기관을[농협]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체결시 세부내용을 재공지 하겠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쿤닥&쿤덕(Koondak&Koonduck)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베이직	[12,100]			99㎡(30평) 기준
	주니어	[7,700]			66㎡(20평) 기준
	딜리버리	[7,700]			23.1㎡(7평) 기준
가맹비	베이직	9,900	계약체결과 동시	시설공사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1.영업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당한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함 2. 영업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주니어	5,500			
	딜리버리	5,500			
교육비	베이직	2,200	계약체결과 동시	교육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브랜드사용, -상권보호, -경영노하우 지도등
	주니어	2,200			
	딜리버리	2,200			

2) 보증금은 계약종료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당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 발생시	직전년도 전체 가맹 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담보목적물	해당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베이직	[14,100]
	주니어	[9,700]
	딜리버리	[9,700]
가맹비	베이직	9,900
	주니어	5,500
	딜리버리	5,500
교육비	베이직	2,200
	주니어	2,200
	딜리버리	2,200
계약이행보증금		2,000(부가세 불포함)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1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점포면적 (3.3㎡)	지급 기한	비고
총계	베이직	가맹본부	98,450	3,282		99㎡(30평)
	주니어		70,950	3,548		66㎡(20평)
	딜리버리		47,300	6,757		23.1㎡(7평)
간판	베이직	가맹본부	4,400	146.67	계약체결 시 50%, 공사완공 10일전 30% ,완공시 20%	돌출4m
	주니어		4,400	220		
	딜리버리		3,300	471.43		
인테리어	베이직	가맹본부	49,500	1,650		
	주니어		33,000	1,650		
	딜리버리		11,550	1,650		
오븐기	베이직	가맹본부	13,200	440.00	계약체결 시50%, 입고시 50%	
	주니어		13,200	660		
	딜리버리		13,200	1,885.71		
주방기기	베이직	가맹본부	9,900	330.00		
	주니어		9,900	495		
	딜리버리		9,900	1,414.29		
주방집기	베이직	가맹본부	5,500	183.33		
	주니어		3,300	165		
	딜리버리		3,300	471.43		
의.탁자	베이직	가맹본부	11,000	366.67		
	주니어		2,750	138		
	딜리버리		2,750	392.86		
디피액자 및 이미지	베이직	가맹본부	2,750	91.67		
	주니어		2,200	110		
	딜리버리		1,100	157.14		
홍보.판촉 물	베이직	가맹본부	2,200	73.33		
	주니어		2,200	110		
	딜리버리		2,200	314.29		

- ▶ 건물 구조 및 가맹점사업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 위 금액은 점포개설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제시된 금액은 점포구조 및 공사기간, 물가변동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면 행정구역단위로 1개동당 1개 가맹점 개설을 원칙으로한다.
 단,동/면단위 세대가 1만세대 이상인 경우,1만세대 당 가맹점1개를
 상업지역인 경우 반경 1km당 가맹점1개를 설치 가능하며 백화점,대형할인점등
 유통집객시설인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받지 않는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을 이수한자	가맹사업이 가능한자
종업원	일반음식점 근무가능한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쿤닭&쿤덕(Koondak&Koonduck) 점포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 철거,전기승압,상.하수도공사,닥트,샤시,가스시설,식기세척기,샤시,냉.난방기기,소방시설,정수기, 외부공사,음향시설,오토바이,초도물품등은 별도임
 - ▶ 건물 구조 및 귀하의 선택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 위 금액은 점포개설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제시된 금액은 점포구조 및 공사기간, 물가변동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준비기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이자 비용은 없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비용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m²당 설계 및 감리비로 평당 22만원(부가세포함)씩 부담하셔야 합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천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예치가맹금은 계약체결 당일 당사지정구좌에 입금하여야함 -그 외 가맹본부사양에 의거 가맹본부 또는 당사지정 협력업체를 활용할 경우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지불은 계약조건에 따라 약정한 날짜에 당사자 에게 지불하여야함 -당사는 귀하가 협력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대금지불이 완료 되어야만 당사는 귀하가맹점 개점 지원함					
납부일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없음	재계약시			최초계약기간 동안 면제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분담금	발생시			전국 광고비 총가맹점주 50%분담금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협의처리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금액	교육 실시 10일 이전			보수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지정업체	협의금액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지정업체	협의금액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지정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3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과 같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된 후에 2년단위 재계약을 위해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신규가맹비의 50%(VAT포함)	재계약 체결시	반환되지 않음	상표사용료 및 가맹점지도비	

또한 시설노후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꾼닭&꾼덕(Koondak&Koonduck)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고 쿤닭&쿤덕(Koondak&Koonduck)를 표창하는 표시가 포함된 일체의 저작물, 메뉴판,

와이드칼라, 메뉴판넬, 기업판넬, 인터넷상의 표시, 114안내 등을 즉시 제거 및 해지한 후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는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는날부터 1일당 20만원씩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꾼닭&꾼덕(Koondak&Koonduck)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원부재료는 가맹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며 1차위반시는 구두경고, 2차위반시는 서면시정요구, 3차위반시는 즉시 계약해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나목)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쿤답&쿤덕(Koondak&Koonduck)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다목)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치킨류,호프 및 이에 부가되는 원.부재료 일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당사는 매출향상등 타당한 이유로 메뉴추가 및 철수를 할 수 있으며,귀하는 이에 협조 하셔야 합니다.)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1차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 2차 서면 시정요구 4회 위반 : 계약 해지	이외에 전가맹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동일규정 적용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본사 공급 품목 (식자재, 공산품등 포함)에 대해서는 (주)일영이푸드(102FOOD)의 노하우 및 상표권등을 보호

하고 상품의 동일성 유지하기 위해서 원재료 및 공산품 자체를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됩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제3자	당사 공급품목	(주)일영이푸드(102FOOD)의 노하우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위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1차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2차서면 시정요구 4회 위반: 계약 해지	기타 법률사항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베이크까르보나라	₩18,900	공문발송 및 전화통지	당사와 귀하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기타 사정을 고려, 권장 소비자 가격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서로 협의 하여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스트치킨냉채	₩18,900		
곤달스페셜1	₩20,900		
철판소세지	₩16,000		
치킨화지타	₩17,000		
새우치즈칩	₩6,000		
베이크치킨	₩16,900		
로스트치킨	₩14,900		
베이크양념(갈리,곤달,간장)	₩16,900		
매운날개&계란탕	₩18,500		
매운철판퐁집	₩14,000		
모두감자	₩8,000		
까르보나라스파게티	₩8,000		
곤달숯불바베큐	₩15,900		
로스트순살/윙	₩16,900		
미트스파게티	₩8,000		
치킨화지타	₩19,900		
하나셋 타코야끼	₩7,000		
닭가슴살 샐러드	₩12,000		
마이맵닭	₩19,5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치킨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꿰 닭 & 꿰 덕 (Koondak&Koonduck)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포 주소 기준 행정구역 동/면 단위 거주인구 1만세대당 1점포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고 거주세대가 1만세대 초과할 경우, 영업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반경1km이외의 지역에서 가맹점 직영점 추가로 낼 수 있으며 배달상권을 포함한다.	계약서에 영업지역 설정기준 예외사항 기재시 지도로 표시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상권변화등의 사유로 귀하의 영업지역을 분할 하여 신규가맹점을 개점하는 경우 귀하에게 우선적으로 신규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합니다.

만약 귀하가 신설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직권으로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쿤닭&쿤덕(Koondak&Koonduck)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쿤닭&쿤덕(Koondak&Koonduck)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

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73%	27%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쿤담&쿤덕(Koondak&Koonduck)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계약기간 만료 90일전에 계약종료 의사통지를 하지않는경우 계약갱신이 자동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고 2년단위로 재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

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6조 제1항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제1항
○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당사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 약 해 지 사 유	관련 조문
○ 귀하가 가맹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 영업과 동종의 영업(치킨등)을 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 당사와 사전 협의 없이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 당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 당사가 공급하는 원부자재를 사용 하지않고 사입하여 쓰는 경우	제37조 제1항
○ 귀하가 당사와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37조 제1항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제13조 제4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7조 제1항
○ 귀하가 당사로 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3일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7조 제1항
○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없이 당사로 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37조 제1항
○ 귀하가 당사의 권장한 상품별 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제1항
○ 귀하가 간판 및 광고로고등 사용시 당사의 동의를 받지않고 사용 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가맹사업법시행령 제15조)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제2항
○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7조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7조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7조제2항 제37조제2항
○ 귀하가 행정처분 통보받고 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격,면허,허가취소 영업정지(15일초과) 등 시정불가한 행정처분 받은 경우	제37조제2항
○ 귀하가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 같은사항을 위반한 경우(단, 시정요구 서면에 재위반시 해지됨을 명기한 경우에 한함)	제37조제2항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7조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7조제2항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7조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거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1개월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는 통지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가맹사업자가 본부와 의 채권 채무의 정산 및 교육과정의 이수 등 가맹점의 계속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선 이행하고 양도승인을 요청할 경우 본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도를 금지하지 아니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검토(양수인 면담포함 7일 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방문하여 양수도 계약 체결(즉시)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051-728-5291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기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당사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 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비를 당사와 협의하여 감액 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비 고
상 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3개월 이내에 서면통지 하고 승인을 받을것	
대리행사	불가능	-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유지 중에 경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꾼닭&꾼덕(Koondak&Koonduck)가맹점 영업과 동종의 영업	불가능	가맹사업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계산으로 가맹 본부의 당해 브랜드와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꾼닭&꾼덕(Koondak&Koonduck)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없음	3일 이상 가맹본부의 허락없는 무단방치 금지	가맹본부와 협의하에 변동가능 (위반시 상품공급, 영업지원 중단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1.가맹점 내외부 청결상황 2.식품 위생점검, 메뉴맛 점검 3.매출회계관리 4.각종 시설관리 5.원부자재,서비스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검 사항확인 →점검표 작성 → 가맹 점사업자 확인및 서명 → 완료	1회/월	가맹 본부	

※당사가 진행하는 위의 모든 관리·감독은 가맹점을 일정수준(품질, 서비스, 위생 등)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시 가맹점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꾼닭&꾼덕(Koondak&Koonduck)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기타 개별행사	행사별로 본사 가맹점협의후 부담금액 결정함		”	”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 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 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주)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의 두가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① 사전 약정

당사 및 귀하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체결 합니다.

② 사전 동의

당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지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주) 위 1항 및 2항의 절차를 거친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가 계획, 주관하여 당사가 배포한 상품교환권과 무료이용권 및 할인권에 대한 판매, 사용 등의 공동판촉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당사에 서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배상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및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D-44~43 (정보공개서, 계약서 및 인근 현황점 문서 제공 14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예치가맹금 예치	- 당사의 예치가맹금 농협 지정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함	D-30~27(3일) (계약체결일)	계약체결동시에 당사에게 예치가맹금을 우체국 지정계좌에 입금 해야함
점포실측/설계	- 주방기기배치확정 - 인허가 및 신고투자비 산출	D-27~25(3일)	
공사착수전 준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장애물철거 - OPEN일자확정 - 사은품선정	D-24~22(3일)	
실내외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간판 및 배기닥터 공사 - 홍보작업	D-21~8(14일)	인테리어, 간판 공사비는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와 별도계약에 의거 지급함
주방집기류 설치	- 주방기기류 입고 및 설치 - 초도물량입고	D-8~2(3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공사기간중)	D-21~1(3일)	
영업시작	- 가맹점 영업개시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자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알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구니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알뜰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알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자영업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
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일간	55만원 한도	지 원 금 액 은 개점행사비에 포함 되어있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당사 부담	문의: 가맹본부 051-728-52 9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본부 051-728-52 91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쿤달&쿤덕(Koondak&Koonduck)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꾼닭&꾼덕(Koondak&Koonduck)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일	내 용	참석대상	비 고
기술전수 교육	7일내외	본사 및 직영점에서 영업기술 및 레시피를 통한 조리기술을 전수함	가맹점 경영주등	* 직원유니폼은 본사에서 구입
현장파견교 육	3일내외	당사직원2명 오픈시 파견지원1명	당사직원	
▶ 교육에 대한 예시이며 기타 추가 교육에 대한 내용은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차	주요내용	교육장소
1일~4일차	-각종제조기계설비 및 기구사용법 -기본접객요령교육, 위생점검 및 교육 -기본제조방법 이론교육 및 실습 -제조레시피 이론교육 및 실습 -체인점 경영 노하우 교육 -종업원 친절교육 노하우 및 금기사항 교육	본사 직영점 또는 우수가맹점
5일~7일차	-메뉴별 제조방법 실습 -제조레시피에 따른 실전 제조 숙련도 점검 -체인점 경영 노하우 교육 -오픈 준비/ 지원/ 점검활동	본사 직영점 또는 우수가맹점
8일~10일차	-오픈지원 -가맹점 홍보활동 점검 -종업원 교육 실시	가맹점 오픈 지원 및 파견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꾼닭&꾼덕(Koondak&Koonduck)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가맹본부 기술전수 교육	7일내외	2,200	기술전수 교육
가맹점 현장 교육	3일내외		
보수교육	신메뉴 출시등	없음	영업중 필요시

입문교육 및 훈련시간은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매일 8시간씩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상호 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 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부산	광안리 직영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61번길 50. 1-3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7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28,00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포스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51-728-529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koondak.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

- 1.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날 : 201 년 월 일
- 2.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 누설하여 귀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비밀준수 의무를 이행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관리번호 :	수령자 (인)
가맹본부 :(주)일영이푸드(102FOOD)	주민등록번호:
대표 : 배 영 미 (인)	전화번호

------(절취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본사보관용)

- 1.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날 : 201 년 월 일
- 2.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 누설하여 귀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비밀준수 의무를 이행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관리번호 :	수령자 (인)
가맹본부 : (주)일영이푸드(102FOOD)	주민등록번호:
대표 : 배 영 미 (인)	전화번호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주)일영이푸드(102FOOD)(꾼닭&꾼덕(Koondak&Koonduck))
	성명(대표자)	배 영 미
	주소(사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7로 65 대 표 전 화 : 051-728-5291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별첨2] 인근 가맹점 및 직영점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1] 직전3개년도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